



## 예시

## 임용('03.4.10)



☞ 기간계산 :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, 군복무기간의 퇴직(전역)일 및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(기간제 교사 포함)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.

☞ 환산율 10할 : ①경력(29일) + ③경력(1년2월29일) = 1년2월58일

환산율 5할 : ②경력(10월3일) ⇒ 10월 3일 × 50% = 5월1일(소수점이하 절사)

$$\begin{aligned} \text{환산율 4할 : } & ④\text{경력}(11월29일) = (11월 29일) \times 40\% \\ & = (11월 \times 40\%) + (29일 \times 40\%) = 4.4\text{월} + 11.6\text{일} \\ & = 4\text{월} + 0.4\text{월} + 11.6\text{일} = 4\text{월} + 12\text{일}(0.4\text{월} \times 30\text{일}) + 11.6\text{일} \\ & = 4\text{월} 23.6\text{일} \Rightarrow 4\text{월 } 23\text{일}(소수점이하 절사) \end{aligned}$$

.∴ 총합계 : 1년 11월82일 = 2년 1월 22일

※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「12월은 1년으로, 30일은 1월」로 각각 계산.



## 예시

## &lt;초임호봉 확정시 임용전 경력의 가감&gt;

## ◦ A교사

- ① 2000.3.1 교원임용, ② 2002.1.1. ~ 2002.12.31. **국내연수휴직**,  
③ 2003.1.1. 복직, ④ 2004.8.31 면직 ⇒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확정 문제

## ◦ B교사

- ① 2000.3.1 교원임용, ② 2002.1.1. ~ 2002.12.31. **육아휴직**,  
③ 2003.1.1. 복직, ④ 2004.8.31 면직 ⇒ 이후 재임용에 따른 초임호봉 확정 문제

☞ A교사 : 임용전 경력을 인정에 있어 교원경력 중 국내연수휴직 기간을 제외

B교사 : 교육공무원법의 개정('00년)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 
호봉승급기간에 산입 ⇒ 육아휴직기간 1년은 임용전 경력기간에 포함

※ 초임호봉 확정 시 인정되는 임용전 경력(영 [별표22]참조) 중에서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함